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저작권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양우 (문화체육관광부 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00. 00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저작권 등록,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,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「저작권법」이 개정(법률 제16933호, 2020. 02. 04. 공포, 2020. 08. 05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저작권 등록 업무 관련

- 1) 법률 개정으로 업무주체를 종전 문체부장관으로 규정(저작권위원회로 위탁)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저작권위원회를 직접적인 주체로 변경함에 따라(법제55조 개정 관련) 시행령의 제반 조항들을 변경·정비
 - 2) 법률 개정으로 등록 반려 근거가 신설되고 직권경정·직권말소 근거가 종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(법제55조 이하 개정 관련), 시행령에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의 규정을 변경·정비
- 나. ‘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’에 대한 확인 관련, 법률 개정
에 따라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
이행 여부 확인(법제104조 개정 관련)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
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다.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·신고 절차 관련, 법률 개정으로 변경허가 절차 및 대리중개업 신고 등 절차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(법제105조 개정 관련), 종전의 시행령에 있던 규정들을 변경·정비

라. 조정제도 관련, 법률 개정으로 ‘직권조정결정’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(법제117조 개정 관련),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‘당사자 불출석’을 삭제하여,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

마.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,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(법제109조 개정 관련),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”으로, “법 제25조제5항”을 “법 제2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25조제5항”을 “법 제2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25조제7항”을 “법 제25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5조제8항”을 “법 제25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5조제10항”을 “법 제25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5조제8항”을 “법 제25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”를 “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5호 중 “등록권리자”를 “법 제55조의2에 따른 저작권 등록자(이하 “저작권 등록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)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

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등록증”을 “제1항 및 제3항의 등록증”으로,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한다.

제29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·경정·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”을 “법 제5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 등(이하 이 조에서 “변경등록등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변경 등”을 “변경등록 등”으로,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반려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하고,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을 준용한다.

제30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,”를 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”로, “발급하고,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”를 “발급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제32조를 제27조의2로 한다.

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로 한다.

제27조의2(중전의 제32조) 중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가”로 한다.

제27조의4(중전의 제33조)제1항 중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”을 “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”으로, “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”을 “위원회 인터넷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5(중전의 제34조) 중 “법 제55조제3항”을 “법 제55조제7항”으로,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위원회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인증)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임치기관의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41조제1항 중 “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”를 “법 제102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4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9조제5항 중 “법 제105조제6항”을 “법 제105조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법 제105조제5항”을 “법 제105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51조의2제4항 중 “법 제105조제4항”을 “법 제105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

제6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관한 업무를 보호원에 위탁한다.

제76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(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01조의7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에 관한 사무

별표 2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업무정지 기준
가.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1호	업무정지 1개월
나.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
다.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5호	업무정지 3개월
라.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6호	업무정지 1개월
마.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개월
바.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4호	업무정지 3개월
사. 법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7호	업무정지 3개월
아. 법 제108조의2에 따라 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8호	업무정지 3개월
차.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법 제105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9호	업무정지 3개월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법률 제16933호, '20.2.4. 공포, '20.8.5 시행 관련)

현행	개정안
제2조(복제·공연 등 내역의 제출)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(이하 “보상금수령단체”라 한다)에 복제·배포·공연·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	제2조(복제·공연 등 내역의 제출)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- ----- <u>법 제25조제7항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3조(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3조(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) ① ----- ----- <u>법 제25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정의 취소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	제6조(지정의 취소) ①----- ----- <u>법 제25조제9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다.	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) ① 삭 제	제8조(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)
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----- 법 제25조제10항 -----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) 법 제25조제10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	제9조(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) 법 제25조제12항-----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상당한 노력의 기준) ① (생 략)	제18조(상당한 노력의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(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	② ----- 법 제25조제10항-----

작물,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6조(등록신청)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	제26조(등록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</u>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저작권등록부 기재 등)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(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	제27조(저작권등록부 기재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</u>	5. <u>법 제55조의2에 따른 저작권</u>

	<u>등록자(이하 “저작권 등록자”라 한다)---</u>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7조의3(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)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28조(등록증의 발급 등) ①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</u>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	제28조(등록증의 발급 등) ① <u>위원회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분실·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<u>등록증을</u>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	②----- --- <u>제1항 및 제3항의 등록증</u>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에</u> ----- -----.
<u>제29조(착오·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</u>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	<u><삭 제></u>

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30조(등록 사항의 변경 등) ①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·경정·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30조(등록 사항의 변경 등) ① 법 제5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 등(이하 이 조에서 “변경등록 등”이라 한다)-----

변경등록등 -----

위원회에 -----
-----.
②법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반
려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

용하고, 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의3을 준용한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---

발급-----

다만, 말소한 경우에는
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
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,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제31조(등록의 직권말소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
1.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
2.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②제1항제2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

<u>록권리자,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한다.</u>	
제32조(신청의 반려방법)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</u> 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	제27조의2(신청의 반려방법) --- ----- <u>위원회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3조(등록공보의 발행 등) ①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</u> 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<u>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</u> 에 게시하여야 한다.	제27조의4(등록공보의 발행 등) ① <u>위원회</u> 는 법 제55조제6항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 인터넷</u> ----- ----- 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4조(등록부의 열람 등)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<u>문화체육관광부령</u>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	제27조의5(등록부의 열람 등) 법 제55조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
제36조(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	제36조(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-- -----

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 -----.
1.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	1. <u>위원회</u>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37조의2(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인증) <u>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.</u>
제38조(저작권자의 표지)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.	제38조(저작권자의 표지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<단서 삭제>
제39조의2(임치기관) (생략)	제39조의2(임치기관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4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하여야 하며, 저작권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	④ ----- ----- ----- 법 제105조제8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(생 략) 제63조(조정의 불성립 등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1.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<신 설>	⑤ (현행과 같음) 제63조(조정의 불성립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<삭 제>
2.·3. (생 략)	3.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
② (생 략) 제68조(업무의 위탁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	② (현행과 같음) 제68조(업무의 위탁) ①----- -----

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.	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2.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(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제2항에 따른 등록접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)	
3. ~ 5. (생 략)	2. ~ 4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신청의 접수업무(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위탁한다.	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관한 업무를 보호원에 위탁한다.
③ (생 략) 제7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	③ (현행과 같음) 제7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제6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2.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(법 제90조 및 제98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에 따른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무

3. 4. (생 략)

<신 설>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2. 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(법 제90조 및 제98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에 따른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01조의7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에 관한 사무

② (생 략)

■ 저작권법 시행령 [별표 2] <신설 2016. 9. 21.>
업무정지의 세부기준(제53조 관련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업무정지 기준
가.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1호	업무정지 1개월
나.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
다. (생 략)		
라.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개월
마.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	법 제109조 제1항제4호	업무정지 3개월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■ 저작권법 시행령 [별표 2] <신설 2016. 9. 21.>
업무정지의 세부기준(제53조 관련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업무정지 기준
가.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1호	업무정지 1개월
나.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
다. (현행과 같음)		
라.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9조 제1항제6호	업무정지 1개월
마.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	법 제109조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개월

<u>이 이를 이행</u> <u>하지 않은 경</u> <u>우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		<u>않거나 허위로</u> <u>한 경우</u> <u>바. 법 제108조제2</u>	<u>법 제109조</u> <u>제1항제4호</u>	<u>업무정지</u> <u>3개월</u>
			<u>항에 따른 명</u> <u>령을 받고 정</u> <u>당한 사유 없</u> <u>이 이를 이행</u> <u>하지 않은 경</u> <u>우</u>		
			<u>사. 법 제108조제3</u> <u>항부터 제5항까</u> <u>지에 따른 조</u> <u>사 및 자료요청</u> <u>에 불응하거나 이</u> <u>를 거부·방해</u> <u>또는 기피한</u> <u>경우</u>	<u>법 제109조</u> <u>제1항제7호</u>	<u>업무정지</u> <u>3개월</u>
			<u>아. 법 제108조의2에</u> <u>따른 징계의</u> <u>요구를 받고</u> <u>정당한 사유</u> <u>없이 그 요구를</u> <u>이행하지 아니한</u> <u>경우</u>	<u>법 제109조</u> <u>제1항제8호</u>	<u>업무정지</u> <u>3개월</u>
			<u>자. 허가를 받거나</u> <u>신고를 한 이후에</u> <u>법 제105조제7항</u>	<u>법 제109조</u> <u>제1항제9호</u>	<u>업무정지</u> <u>3개월</u>

	<u>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의 사유에</u> <u>해당하게 된</u> <u>경우</u>		
--	--	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저작권정책과	
연 락 처	이명진 사무관 (044-203-2476)